

## 금릉 로데오 거리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릉 로데오 거리 간판개선사업 구간에 대하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 1. 13.

### 파 주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릉 로데오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① 다음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한다.

| 구역              | 적용구간           | 거리   | 비고     |
|-----------------|----------------|------|--------|
| 금릉 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 | 파주시 금촌동 978-20 | 158m | 위치도 참조 |

② 적용범위 : 적용구간 도로 양쪽 좌·우측에 접한 건물의 보이는 업소

**제4조(광고물등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굵은 지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접한 업소의 벽면 이용 간판
2. 2차선 이상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벽면 이용 간판
3. 의료시설·약국 및 이·미용업소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약, 사인볼)
4.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한 2층 이상의 업소에서 필요한 경우 제6조 규정에 따른 권장형 돌출간판

**제5조(돌출간판)** 돌출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다만, ‘이용업소 표시등(「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 규정에 따른 이·미용업소의 사인볼)’은 법·영·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표시범위 : 건물 전면 좌우 끝단에 지상 2층 이상 5층(상업지역 및 9층 이상 건물은 7층까지)이하로 1층 벽면 이용 간판 상단높이 이상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개 동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이하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줄로 설치할 수 있다.
2. 표시제한 : 2층 이상 건물로서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배경색은 그레이 톤(회색 계열)을 사용하고 광원을 표출 시에는 문자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 또한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물과 건물의 인접한 건물 끝단에 병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개를 표시하되 간판의 배경색 제한을 받지 않고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표시완화 : 친환경 소재(유연성원단 소재 제외)를 사용하여 건물 단위별로 개성 있게 디자인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과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4호의 규격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4. 규격 : 건물 단위별 표시가능 공간과 표시대상 업소 수에 따른 광고물 규격 총량제를 적용한다.
  - 가. 가로규격 : 건물 벽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
  - 나. 세로규격 : 1개층 높이(최대 3미터 이내) 이내로 업소 수에 따라 높이 조정
- 다. 기타 : 광고물 간 상·하 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1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5. 내용표시 : 돌출간판의 내용표시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로 표시하되, 보조표시 문자의 세로크기는 15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미용업소 표지등’ 이외에는 표시내용을 회전시켜 표시할 수 없다.

**제6조(권장형 돌출간판)** 권장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제5조 제1호와 같다.
2. 표시제한 :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물과 건물의 인접한 건물 끝단에 병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또한 간판의 배경색은 그레이 톤(회색 계열)을 사용하고 광원을 표출 시에는 문자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
3. 표시완화 : 박스형, 모서리커브형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단위별로 개성 있게 디자인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호의 규격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4. 규격 : 가로의 길이는 80센티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1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건물벽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내용표시 : 광고물의 표시 내용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면적의 100분의 4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형 돌출간판)** 소형 돌출간판은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1층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표시범위 : 1층 높이 이하로 업소별 1개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6조 규정에 따른 권장형 돌출간판과 중복하여 표시할 수 없다.(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규 격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내로, 1면의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호, 브랜드 명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내용표시 : 약국, 열쇠 등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 기호, 문자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기존 광고물의 표시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재한다.

제8조(사후관리) 광고물등을 신규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 8.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도 조례, 시 조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등에 따른다.

## 부 칙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도 조례, 시 조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등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금릉 로데오 거리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파주시 고시 제2020-224호(2020.8.21.))는 폐지한다.

【별표】 정비시범구역 위치도

